

또한,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직원 대상 영유아 등·하원시 안전 교육 및 인계조치 등에 대한 방법·절차를 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가. 등·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의무 도입(안 제34조)

나. 등·하원시 영유아 안전관리 방법 및 절차 도입(안 별표8 제3호마목)

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직원 대상 등·하원 안전교육 의무 및 보호자 인계 확인 의무

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(보육기반과장)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○ 일반우편: (30116)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, KT&G 세종타워 B, 13층

○ 전자우편: [suna1155@korea.kr](mailto:suna1155@korea.kr)

○ 팩스: 044-202-3975

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hw.go.kr>) 『법령·자료-입법/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(전화 044-202-3583, 팩스 044-202-397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●환경부공고제2020-1026호

「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(환경부고시 제2017-15호)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1일

환 경 부 장 관

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### 1. 개정사유

기존오염도는 PM10으로, 사업장 추가오염도는 총먼지로 산정하고 있어 이를 PM10으로 일원화하고 미세먼지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, 총먼지를 PM10으로 전환할 분율과 분율의 측정·분석 방법을 규정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업종별 대표 분율(미세먼지/총먼지) 제시(안 제10조제7항 및 별표 12)

나. 제시한 분율 외에 사업장이 직접 측정·분석한 자료를 분율로 활용할 수 있도록 측정·분석 방법 규정(안 제10조제8항)

### 3. 의견제출

「배출영향분석의 방법 및 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

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. 11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담당 : 통합허가제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(www.me.go.kr/법령마당/입법예고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(우편번호 : 30103)

※ 자세한 사항은 전화(044-201-6717, 6722), FAX(044-201-6728) 또는 전자우편(h.y.song89@korea.kr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● 환경부공고제2020-1029호

「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(환경부 고시 제2020-1029호)」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1일

환 경 부 장 관

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그간의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조성자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시장조성자를 신규지정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배출권 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법령 인용조문 현행화 (안 제1조, 제2조제1호, 제3조제1항)

나. 시장조성자 최초지정연도 관련 조문 명확화 (안 제3조제1·3·4항)

마. 시장조성자 지정기준 중 배출권 거래업무기간 삭제 (별표1)

바. 시장조성자 평가기준 개선 (별표2)

3. 의견제출

「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고시(안)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. 1. 11.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기후경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dal148@korea.kr